



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현안보고

○ 「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」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
(경기도-경희대학교)

경 기 도
(경기도서관)

「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」 업무협약

추진 배경

「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」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희대학교와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

□ 협약개요

- 협약대상 : 경희대학교
- 협약일자 : '26. 7월 중 ※ 의회 보고 후 일정 확정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
- 주요내용 :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
 - 협약 목적, 협력 사항(행사 기획 및 운영, 콘텐츠, 참여 대상 등)
 - 협력 운영원칙, 비밀 유지, 협약 기간 등

2026년 「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」 사업개요

- (목 적) 지역 협업을 통해 기후환경 실천 사례를 공유하여 시민 인식 제고 및 기후환경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(대 상) 경기도민
- (시기/장소) '26.10월중 / 경기도서관
- (사 업 비) 50,000천원(도비) ※ 경희대 매칭 사업비 : 50,000천원
- (내 용) 주제 전시, 기후 큐레이션, 로컬작가 발굴, 저자 및 전문가 네트워킹, 에코 퍼블리셔스 마켓, 기후인문학 컨퍼런스 등

□ 향후일정

-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 업무협약 체결('26. 7월 중)
-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의 안정·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

□ 기대효과

- 도민 참여형 기후 행동 생태계 구축 및 지식 관광 선도
- 기후 출판 네트워크 실현으로 출판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

「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」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

경기도와 경희대학교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「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」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업무협약은 경기도와 경희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「2026년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」를 추진하고, 기후·환경 인식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경기도”는 경기도서관을 말한다.

② “경희대학교”는 경희대학교 RISE사업단(국제캠퍼스)을 말한다.

③ “북페어”는 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를 말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 경기도와 경희대학교는 「경기도서관 기후 북페어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- ① 기후 북페어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협력
- ② 기후·환경 관련 콘텐츠(도서, 전시, 프로그램 등) 구성 및 운영 지원
- ③ 참여 대상(학생, 지역주민, 독립서점 등) 발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
- ④ 행사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 협력
- ⑤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연계 및 지원
- ⑥ 기타 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

제4조(협력 운영원칙)

- ① 각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한다.
- 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③ 본 협약에 따른 세부 운영은 각 기관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.

제5조(양도 금지) 이 업무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으로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제6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이 업무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따로 정한다.

제7조(협정 조정) 이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의견 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.

제8조(업무협약서의 효력) ① 이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고,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 내라도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이 업무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, 상호 합의하여 업무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이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9조(기타 사항)

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한다.

이 업무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7월 00일



도지사 ○ ○ ○



총장 ○ ○ ○

(서명)

(서명)